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형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63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4월 06일
발 의 자: 김형재, 민병주 의원(2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영철,
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
김재진, 김태수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
유만희, 윤기섭, 이성배,
이효진, 최민규, 허·훈,
홍국표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'안보' 관련 자원을 관광 요소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, 안보 관광 상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려는 것임.
- 아울러 기존의 역사, 문화, 예술, 자연, 산업에 국한되었던 관광자원의 범위를 '안보' 영역까지 확대하여, 서울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범주에 '안보'를 추가하여, 시장이 안보와 연계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 제3항)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·산업”을 “역사·안보·문화·예술·자연·산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<u>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·산업</u>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·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7조(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역사·안보·문화·예술·자연·산업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 관광 촉진과 시의 관광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
- 안 제7조(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제3항은 “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·산업” 등의 관광자원 대상에 “역사·안보·문화·예술·자연·산업”으로 “안보”를 추가하는 것으로,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권 봉 수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hibedoge0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